

수수료(제69조제1항 관련)

납 부 자	금 액
1.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.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나. 관광사업의 변경등록	1)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: 20,000원 2)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: 30,000원(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다) 1)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: 15,000원 2)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: 15,000원(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 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)
2.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. 신규허가 나. 변경허가	100,000원 (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,000원) 50,000원 (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,000원)
3.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	20,000원
4.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 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	20,000원
5.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.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나. 사업계획 변경승인	50,000원 (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 원을 가산한 금액) 50,000원 (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)
6.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	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 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른 금액
7.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(별표 8 제3호에 따른 머신게임만 해 당한다)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. 신규로 반입·사용하거나 검사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나. 가목 외의 경우	대당 189,000원 기본료 100,000원 + 대당 25,000원

8.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	20,000원
9.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	5,000원
10.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	3,000원
11.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 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	20,000원